

# 2016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01일

경 상 남 도 지 사

## 1. 채용예정인원

□ 예정인원 : 196명(공개경쟁 119명, 경력경쟁 77명)

채용 방법	계 급	채용 분야	인 원(명)			비 고	
			계	남	여		
총 계			196	178	15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 방	119	109	10		
		구 조	30	30			
		구 급	35	30	5		
		전 산	2	2			
		통 신	3	3			
		구급상황관리	3	남여구분없음			
		항 해	1	1			
		지방소방장	항공정비	1	1		
		지방소방위	항공조종	2	2		
		경력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 방	119	109	10
구 조	30			30			
구 급	35			30	5		
전 산	2			2			
통 신	3			3			
구급상황관리	3			남여구분없음			
항 해	1			1			
지방소방장	항공정비			1	1		
지방소방위	항공조종			2	2		

##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 응시자격 정지

다음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마.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바.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3. 시험응시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불가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 불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 응시연령

채용방법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01.01.~1995.12.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01.01.~1996.12.31. (1975.01.01.~1993.12.31.)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 징병검사 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 □ 거주지 제한

##### 1.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중 구조, 구급, 구급상황관리

- 2016.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16.01.0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2. 경력경쟁채용 중 전산, 통신, 항해, 항공정비, 항공조종

- 거주지 제한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 제한

○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분 야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구조 (지방소방사)	<p>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b>3년 이상</b>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b>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b>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전역예정 6개월 이내에 있는 자)</p> <p>육군특전사, 육군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수방사35특공대대</p>
구급 (지방소방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전산 (지방소방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b>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b> 이 있는 자
통신 (지방소방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b>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b> 이 있는 자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경상남도 119종합방재센터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
항해 (지방소방사)	<p><b>4급 이상</b>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b>승무경력이 2년 이상</b>인 자</p> <p>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p>
항공정비 (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회전의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b>실무경력이 2년 이상</b> 인 자
항공조종 (지방소방위)	<p>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b>조종경력 2년 이상</b>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전의 항공기 <b>1,500시간이상</b> 비행경력(총 비행시간을 말함,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li> <li>-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li> <li>- 항공법에 의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li> </ul>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 또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2.(수) ~ 3. 8.(화) · 취소기간 : 3. 2.(수) ~ 3. 11.(금)	필기시험	3. 29.(화)	4. 9.(토) 4. 16.(토)[ <b>항공분야</b> ]	4. 29.(금)
	체력시험	4. 29.(금)	5. 10.(화)~5. 12.(목)	5. 20.(금)
	신체검사	5. 20.(금)	5. 25.(수)~5. 27.(금)	6. 10.(금)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	6. 10.(금)	6. 22.(수)~6. 24.(금)	7. 8.(금)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道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http://exam.gsnd.net>)에 공고

###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시험과목

채용방법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비 고
공개경쟁 채 용	소 방	필수(3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과목) : 소방학개론 <sup>1)</sup> ,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sup>2)</sup> , 사회, 과학, 수학 <sup>3)</sup>	각 과목별 20문제 100점 만점 (4지선택형)
경력경쟁 채 용	항공분야 <sup>가)</sup>	필수(2과목) :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1과목) :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일반분야 <sup>나)</sup>	국어, 영어 <sup>4)</sup> , 소방학개론	

가) **항공분야** : 항공조종, 항공정비

나) **일반분야** : 구조, 구급, 전산, 통신, 구급상황관리, 항해

1)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붙임1)

2) 소방관계법규

-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수학 :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4)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합격자 결정 : 객관식 4지 택1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공개경쟁채용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
- ▶ 경력경쟁채용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
-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 도핑테스트 실시

###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호('2016.1.4.)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안내문 참조[붙임 3]

## ○ 합격자 결정

- ▶ 6개 종목(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 필요서류 제출여부 및 응시자격 요건, 가산특전 등 서면 심사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신체검사 등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며,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은 일정을 고려하여 교차시행 함)**

##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로 구분 실시
- 합격자 결정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방법(면접시험 합격자 중) : 필기시험성적 + 체력시험성적 + 면접시험성적
- 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바. 추가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8(화) 09:00~21:00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

나.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 접속하여 접수 가능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원서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 070-4012-6013~4)

다.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 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처리비용 별도

## 라.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 × 4.5cm 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유의

##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
-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채용분야별로 합격자 결정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 환불 가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시험장소 공고일부터)에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1]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다. 가산점(특전)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지방소방사)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 귀책사유는 응시

자에게 있음)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 (2015. 4. 9. 24:00)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자격제한 중 운전면허 및 분야별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이며, 필기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입니다.
-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565)
- 공고내용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소방행정과(☎ 055-211-5314)

## 8. 기타 안내사항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관련 「별표7」 )

###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 별표6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기능분야에 따라 표시한 것임.

가점비율 분야	5%	3%	1%
<b>자격증 (면허증) ①</b>	소방관련	소방관련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
	중	중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가스기능장,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자부품장착(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농업기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반도체 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사무자동화, 정보보안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응용,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정보통신,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 가스(기능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시설관리사		
<b>사무 관리②</b>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 초과시 5%만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발전 과정</li> <li>-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li> <li>-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li> <li>-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li> <li>-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li> </ul>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li> <li>-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li>- 위험물 안전관리</li> <li>-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li> <li>-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li> </ul>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특징과 유형</li> <li>-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li> </ul>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li> <li>- 긴급구조</li> <li>-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li> </ul>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li> <li>- 연소의 조건 및 형태</li> <li>- 발화의 조건 및 과정</li> </ul>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의 정의</li> <li>- 연소 가스</li> <li>-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 <li>-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 </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의 조건</li> <li>-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 폭연과 폭굉</li> <li>- 가스·분진·분해 폭발</li> <li>-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정의</li> <li>-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li> </ul>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li> <li>-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li> </ul>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의 유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li> <li>-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li> </ul>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li> <li>-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li> </ul>

분 야		내 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li> <li>-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수단</li> </ul>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li> <li>-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li> <li>-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li> <li>-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li> <li>-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li> </ul>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li> <li>-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li> <li>-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li> <li>-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li> <li>-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li> </ul> <p>※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p>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지 참조)은 금지됩니다.

###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체력시험일 제출기한 공지)**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